

#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  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,  
행정자치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 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책무가  
강화되고,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운영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 
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.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 
변화된 법 제도에 맞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 
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이러한 법률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기부자 예우의 기준과 운영 방식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이에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,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원칙과 범위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며, 예우의 사후관리 및 철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기부자 예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여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기부금품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기부자 예우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부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- 이를 통해 서울시 전반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, 공익과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부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,  
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